# 회 원 관 리 규 정

# 회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원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가입 자격)** ①회원가입 자격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업체·단체로 한다.(개정 2013. 3. 8)

**제4조(회원의 종류)** ①회원의 종류는 직무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1. 7.19, 2013. 3. 8), <단서삭제 2011.12.27>

②직무회원은 정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설계회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 및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2. 감리회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및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3. 선임회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개정 2004. 6. 29, 2021. 3. 26, 2023.9.19.)
4. 대행회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개정 2004. 6. 29, 2021. 3. 26)
5. <삭제 2013. 3. 8.>

③일반회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회원 이외의 전력기술인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1, 2013. 3. 8, 2016. 1. 1), <단서삭제 2011. 7. 1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개정 2016. 1.1)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별표2의 비고2 내지 비고6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학력이 있는 자 (개정 2016. 1. 1., 2023. 9. 19.)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별표2의 비고7에 해당하는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부위탁업무 통합관리 운영지침 제43조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인정신청(이하 “경력신청”이라 한다)을 필한 자 (개정 2016. 1. 1, 2023. 9. 19, 2025.

7. 1, 2026. 1. 1)

④<삭제 2013. 3. 8>

1. 삭제 <2008. 7. 1>
2. 삭제 <2008. 7. 1>
3. 삭제 <2008. 7. 1>

⑤특별회원은 전기관련 업체(기관포함) 또는 협회의 취지에 동의한 업체·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13. 3. 8)

⑥제2항의 직무회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제3항의 일반회원으로 변경된다.(신설 '98. 5. 8, 개정 2013. 3. 8, 2016. 1. 1)

**제5조(회원 신규가입 및 재가입 절차)** ①회원으로 신규가입하거나 제명 또는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9, 2008. 7 .1, 2016. 1. 1)

1. 회원가입원서 (개정 2008. 7. 1, 2016. 1. 1)
2. 전기분야 기술자격·학력 또는 경력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정 2008. 7. 1, 2016. 1. 1)
3. 삭제 <2008. 7. 1>
4. 삭제 <2008. 7. 1>
5. 삭제 <2008. 7. 1>
6. 삭제 <2008. 7. 1>

②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력기술인으로 경력신청을 한 자가 경력신고비 및 경력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가입비는 면제하고 회비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9, 2016. 1. 1, 2026. 1. 1)

③정관 제12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명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로 정한 복권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규정에 따른 가입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

**제6조(출자증권의 취득)** 삭제 〈2004. 6. 29〉

**제6조의2(원로회원의 자격)** ①원로회원은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20년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만 70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2019. 10.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회원은 차기년도부터 제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납부가 면제되며 당해연도 연회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21. 3. 2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회원에 해당하는 원로회원은 직무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회원에 해당하는 원로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되, 제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5. 7)

**제7조(회원번호 등 부여)** ①신규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와 최초 경력신청자는 가입순서대로 회원번호(기술인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제명이나 탈퇴 후 재가입 하는 자는 기존 부여된 기술인번호로 가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08. 7. 1, 2013. 3. 8, 2016. 1. 1, 2026. 1. 1)
②특별회원은 가입순서대로 특별회원번호를 별도로 부여한다. (신설 2016. 1. 1)
③특별회원의 소속 기술인력 중 회비규정 제5조2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원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16. 1. 1)

**제8조(회원증 발급 등)** ①협회 정상회원(자격상실, 제명, 탈퇴, 자격정지 제외)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22.12.14)
②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시에 제1항의 회원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서식에 따라 모든 사항이 기재·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2.12.14)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임원, 대의원 및 기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서삭제 '00. 4. 1>, <단서신설 '10.10.26> (개정 2013. 3. 8.)

②부과된 회비를 회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제2호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9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단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에 따라 회비규정 제5조 제6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전력기술인(직무회원 및 일반회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소속 전력기술인이 1,000명 미만이더라도 공명선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시행 2016. 3. 10.)
④제3항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에 의거 적용한 회비와 회원구분별(직무회원 또는 일반회원) 회비와의 차액을 납부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시행 2016. 3. 10.)

⑤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품위유지 및 전력기술 업무의 성실수행
3. 회비의 납부
4. 삭제 〈'98. 5. 8〉
5.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⑥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회 또는 소속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1. 회원 신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직장 및 거주지의 변동사항
3. 경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제명, 탈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격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

1. 사망하였을 때 : 사망일 기준 (개정 2016. 1. 1)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선고일 기준 (개정 2016. 1. 1)
3. <삭제 2009.12.22>
4. 회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개정 2009.12.22)
5. 회비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신설 '98. 5. 8, 개정 2021. 3. 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

1.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 처분일 기준
2. 회비규정에 의한 연회비를 3년간 연속하여 미납한 때 : 3년째 되는 당해연도 말일 기준

③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별지 제9호서식의 회원탈퇴서를 제출한 때에는 회원탈퇴서 접수일 탈퇴조치 한다. 단, 회원을 탈퇴하고 경력관리자로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경력관리비를 납부합으로써 회원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경력관리비 납부일을 회원탈퇴일로 본다. (신설 2016. 1. 1)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 행정관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설계사의 면허정지, 감리원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정관 제12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6. 1. 1)
3.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서 해임된다. (단서신설 2009.12.22, 단서삭제 2016. 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제9조제5항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복권)** ①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총회의 의결로 복권될 수 있다. (개정 2013. 3. 8, 2016. 1. 1)

②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그 자격정지는 해제된다. (개정 2010.10.26, 2016. 1. 1)

③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의 자격정지는 해제된다. 다만, 시·도회규정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신설 2009.12.22, 개정 2016. 1. 1)

④회원자격이 정지되어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서 해임된 자는 회원자격이 복권되어도 해임전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는 복권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대의원은 회비를 완납하여 회원자격이 복권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복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1)

⑤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미납회비를 완납하여도 복권될 수 없으며, 신규회원 가입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1)

**제13조(재가입)** (개정 '98. 5. 8, '13. 3. 8), <삭제 2016. 1. 1>

**제14조(포상 및 징계)** ①협회는 전력기술의 향상 및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벌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5조(회원 관리업무)** 협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회원의 가입 사무
2. 회원 신상변동사항 정리 및 조치
3. 자격정지 및 제명조치

4. 회원명부, 회원수첩 등의 발간 및 배부
5. 회원관리
6. 회원의 취업알선

**제16조(회비납부)**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회비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회관할 회원관리 원칙)** ①회원의 관리는 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시・도회별로 관리한다.(개정 2003. 1. 8, 2010.10.26)

②시・도회소속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10.26)

1. 직무회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일반회원은 거주지로 한다. 다만, 본인 희망시 소속시・도회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소재지로 한다. (개정 2003. 1. 8, 2004. 6. 29, 2010.10.26, 2011. 7.19)
3. <삭제 2013. 3. 8>
4. 특별회원은 중앙회에서 관리한다.(개정 2003. 1. 8)

③ <삭제 2009.12.22>

**제18조(비밀유지)** 회원에 대한 자료는 회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서류관리)** 회원 가입원서는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08. 7. 1)

1. 삭제 <2008. 7. 1>
2. 삭제 <2008. 7. 1>

**제20조(보고)** 삭제〈'98. 5. 8〉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전기기사협회"라 한다)에서 승계되는 회원중 선임 및 대행회원은 직무회원으로, 일반회원은 일반회원으로, 준회원중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회원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각각 승계되며 특별회원은 특별회원으로 승계한다.

③**(출자증권의 취득유예)** 정관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사협회에서 승계된 (설계・감리・선임・대행・공사업체 소속)자는 1997년 12월 31일 까지 공제사업 출자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도회발전에 기여한 개인가입자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도 1월 정기총회 이후 선출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 시행일(2013. 3. 8.)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정관 제9조 개정 시행일(2016. 3. 10)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제136차 이사회(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7, 2014. 7. 1, 2014.12.23, 2016. 1. 1, 2016. 7. 1, 2020. 10. 27)

# 회 원 가 입 원 서

<table>
<tr><td colspan="2">회원구분</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 colspan="2">사 진</td><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한 문)</td><td>자택전화</td><td colspan="2">(  ) -</td></tr>
<tr><td>E-mail</td><td>@</td><td>휴대전화</td><td colspan="2">(  ) -</td></tr>
<tr><td colspan="2">자택주소</td><td colspan="5">(  -  )</td></tr>
<tr><td colspan="2" rowspan="2">현근무처</td><td>직장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1개항목이상 기재바랍니다</td><td rowspan="3">기술<br>자격</td><td>자 격 종 목</td><td colspan="2">자 격 번 호</td><td colspan="2">합격일자</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  .  .</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  .  .</td></tr>
<tr><td>출신<br>학교</td><td colspan="2"></td><td>학 과 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직장<br>경력</td><td>근무처</td><td colspan="2">근무기간</td><td colspan="2">담당업무</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일반사항
- ㅇ수집목적 : 회원가입 및 권리·의무실현, 회원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협회의 선거관련 선거인명부 작성 및 제공
- ㅇ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JPG 등 그림 파일),** 주소, 직장, 자격, 학력, 경력, 연락처
- ㅇ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가입기간
- ※ 선거인 명부 제공 : 성명, 주소(직장명포함), 휴대폰번호 등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ㅇ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부동의시 회원가입이 거부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해당란 "V") |
|---|
| □동의 □부동의 |

※ 첨부 : 전기분야 기술자격·학력 또는 경력사항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본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협회회원으로 가입하고자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7. 1, 2016. 1. 1)

# 특별회원사(업체·개인) 가입원서

<table>
<tr><td colspan="2">업 체 명</td><td colspan="2"></td><td>대표자 성명</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소 재 지</td><td colspan="2" rowspan="2">(　　-　　)</td><td>사업자등록<br>번　　호</td><td></td></tr>
<tr><td>법 인 등 록<br>번　　호</td><td></td></tr>
<tr><td colspan="2">사업의<br>종　류</td><td>업태</td><td></td><td>종　　목</td><td></td></tr>
<tr><td colspan="2">담당부서</td><td colspan="2"></td><td>담당자<br>(직위/성명)</td><td></td></tr>
<tr><td rowspan="5">연<br>락<br>처</td><td>구 분</td><td colspan="2">전화번호</td><td colspan="2">휴대폰</td><td>E-Mail</td></tr>
<tr><td>대표자</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담당자</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회계담당</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FAX</td><td colspan="2"></td><td>홈페이지</td><td colspan="2"></td></tr>
</table>

본 업(단)체 및 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 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업·단체에 한함.)

년　　월　　일

신청회사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8. 7. 1>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12.27, 2014. 7. 1, 2016. 1. 1, 2022.12.14)

# 회 원 증

회원명(업체명) :
회원번호 :
가입일자 :
생년월일(법인 · 사업자번호) :

| 사 진 |
|---|

위 사람(업 · 단체)은 협회 정관 제7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한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별지 제3호의 2 서식〉 (신설 2022.12.14)

# 회 원 증

사 진

성 명

소 속 :
회원번호 :

위 사람(업 단체)은 협회 정관 제7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한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별지 제4호서식〉 삭제 〈'98. 5. 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98. 5. 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98. 5. 8〉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3. 1. 8), <삭제 2009.12.22>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3. 1. 8, 개정 2004. 6. 29, 2010.10.26, 2011. 7.19, 2011.12.27, 2014. 7. 1)

# 소속 시·도회 변경신청서

| | | | | |
|---|---|---|---|---|
| 회 원 번 호 | | | 연 락 처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거주지 주소 | | | | |
| 직장 | 직장명 | | | |
| | 주 소 | | | |
| 현 소속 시·도회 | | | | |
| 희망 소속 시·도회 | 현 직장 소재지 (  )시·도회 | | | |
| 변경사유 | | | | |

위 본인은 회원관리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속 시·도회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 1. 1)

# 회 원 탈 퇴 서

| 회원구분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연 락 처 | ( ) - |
| 현 주 소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ㅇ수집목적 : 회원탈퇴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 ㅇ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ㅇ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후 1년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ㅇ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부동의시 회원탈퇴가 거부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해당란 "V")**

□동의 □부동의

본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귀 협회회원을 탈퇴하고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